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6. 13.(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점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마포점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
- 제출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56)

2. 제출이유

- 점자도서, 음성도서 등을 개발·보급 하여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점자도서관 운영의 위탁 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점자도서관 운영

나.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년(2023. 7. 30. ~ 2025. 7. 29.)

※ 최초 민간위탁일 : 2015. 5. 1.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점자도서관 운영 및 사업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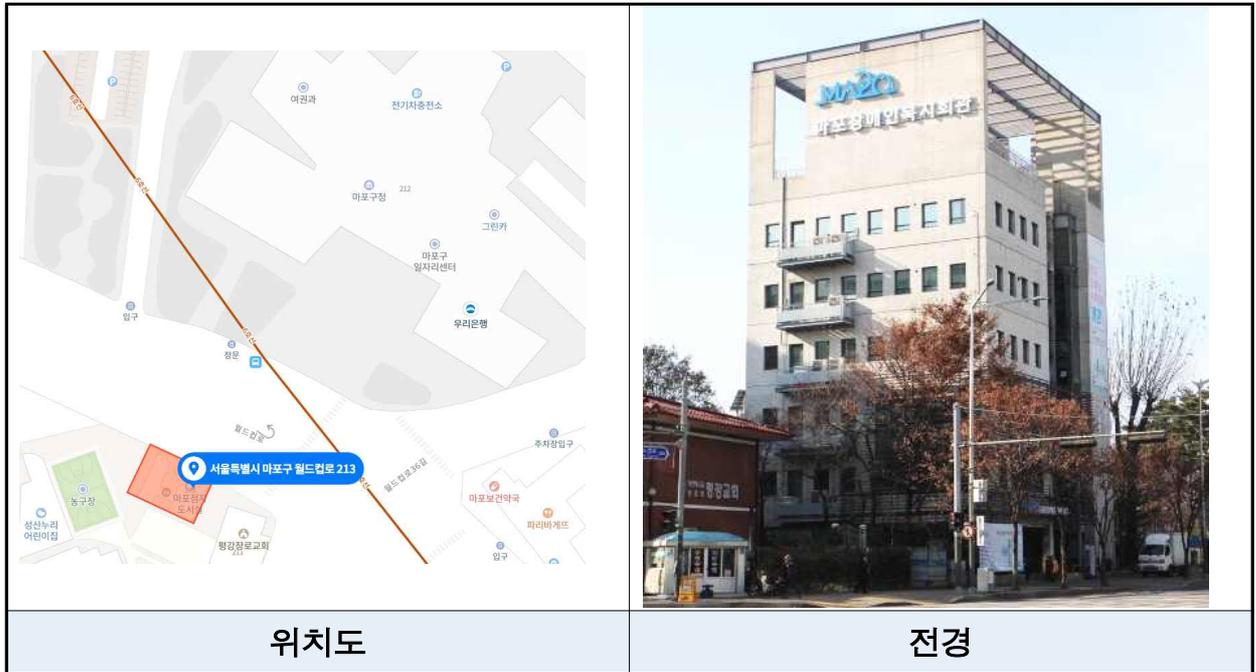
-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 2) 도서관의 열람·대출 및 자료의 관리
- 3) 점자도서, 음성도서, 전자도서, 점자소식지 등 제작 및 보급
- 4) 관련 도서 등 물품 구매, 물품 및 시설 관리 등
- 5)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관리
- 6)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2층
- 2) 시설현황
 -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6층(지상 2층 사용)
 - 면적: 127.08㎡(마포점자도서관 시설 전용 면적)
 - 층별현황

층별	용도	면적(㎡)	비고
계		1,409.53	
(옥탑)	옥외휴게실, E/V기계실	(50.94)	
6	마포구 CCTV통합 관제센터	212.49	구민 안전과
5		212.49	
4	마포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212.49	
3	마포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212.49	
2	마포점자도서관	212.49	
1	주차장, 안내소, 공중화장실	80.51	
B1	기계실, 전기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266.57	

3) 위치도 및 전경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3년 예산 기준)

1) 소요예산: 104,284천원(구비 1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목	세목			
계		104,284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104,284	-인건비 77,000 -운영비 27,284	구비100%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1) 마포점자도서관 재위탁 계획 수립: 2023. 5월
- 2)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 2023. 5~6월
-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2023. 6월
- 4) 위탁 운영 개시: 2023. 7월

4. 검토의견

- 본 마포점자도서관 민간위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마포점자도서관 운영사무의 재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